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5년 3월 30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범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3월 18일(水), 마포구청장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3월 20일(金)

4. 관련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 제16조의2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5. 개정이유

1995.5.3「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되어 일부 내용이 조례 제정의 근거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6. 주요내용

○ “지원사업” 의 정의 정비(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에 따른 지원금
-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 지원금의 이월사용 규정 삭제(안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7.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되어 일부 내용이 조례 제정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안 제2조는 현행 법률(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지원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안 제6조는 이월사용에서는 지원금을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관련조문 삭제하였음.

○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

검토의견으로는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에 따른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운용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된 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지원사업의 정의를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지원금의 이월사용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또한 상위법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